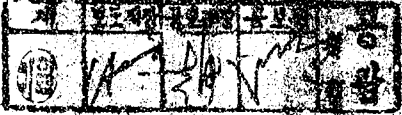


제 1255 호

1987. 4. 28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임 보 현
직권인 송 종 김 선
전화번호 231-5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번호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시정관해정발간배부..... 3

○ 조 례
 제 2153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경원
 조령중개령조령..... 4
 제 2154 호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소설적조령중개령조령..... 5
 제 2155 호 : 서울특별시공사무소설적조령중개령조령..... 6
 제 2156 호 : 서울시립대학교수직령조령중개령조령..... 6
 제 2157 호 : 서울특별시건축사설적조령중개령조령..... 7
 제 2158 호 :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적조령중개령조령..... 7

(이런계속)

공									
삼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서보는 공문시행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서울특별시

제 2159 호 :	서울특별시영안동감삼리조택중개정조택	7
제 2160 호 :	서울특별시북동문파희관설치조택중개정조택	8
제 2161 호 :	서울특별시보길동경안구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8
제 2162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택중개정조택	8
제 2163 호 :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택중개정조택	9
제 2164 호 :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9
제 2165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0
제 2166 호 :	서울특별시중합건사무부설치조택중개정조택	10
제 2167 호 :	서울특별시능지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1
제 2168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1
제 2169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2
제 2170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2
제 2171 호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3
제 2172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3
제 2173 호 :	서울특별시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택중개정조택	13
제 2174 호 :	서울특별시소방시설조택중개정조택	14

◎ 규 칙

제 2169 호 :	서울특별시민예출판국운영규칙중개정규칙	15
제 2170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9
제 2171 호 :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1
제 2172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3
제 2173 호 :	서울특별시능지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3
제 2174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3
제 2175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4
제 2176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4

◎ 고 시

제 272 호 :	도시계획시선(학교)지적승인	24
제 286 호 :	공원입장료불징수할수있는공원지정	25
제 295 호 :	도시공원시설사용료승인	25

◎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제 1 호 :	선박운항허가	27
----------------	--------	----

◎ 공 고

제 279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27
제 276 호 :	서울특별시식물진흥기금출납명령판의 직인신공등록	28

◎ 사 령

공 문 시 형

(관 일 설 령)

서 울 특 별 시

법부 23200-627

731-6157

1987. 4. 28.

수신: 수신처: 창조

제목: 시정관해결 방안 배부(제 10집)

1. 시장업무 수행과정에서 남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손사건의 '85-'
'86 기간중 대법원 판결사례를 모아 소손사건 발생을 예방할수 있는 적합
한 행정처분과 소송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발간한 시정관해결을 아래와 같
이 배부하니 서무담당 임장지참 기일내 수령하기 바람.

가. 배부일시: 1987. 4. 28-5. 9

나. 배부장소: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다. 배부방법

- 본 청: 각과에서 직접수령(단, 소방본부, 경찰국은 주무부서에
서 일괄수령)
- 구 청: 기획감사과에서 일괄수령(보건소문 포함)
-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일괄수령

서 울 특 별 시 장

법무담당관 전결

수신처: 서관 01, 석과 01-64, 소방행정과, 경무과, 서구 01-17, 석보 01-17.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북동지구개발사업소, 서울
대공원관리사업소, 한강관리사업소.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87. 4.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㉑

㉑서울특별시조례제 2153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지방공무원정원표

가.일반회계 4급정원 "10"을 "12"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6"을 "7"
로 하며 "행정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을 신설하고 5급정원 "212"
를 "21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
정직 "146"을 "147"로 하며 "행
정 또는 농림직 2"를 "행정 또는
임업직 2"로 하고 "농림직 5"를
"임업직 5"로 하며 "농림 또는
토목직 1"을 "임업 또는 토목직 1"
로 하고 6급정원 "382"를 "383"
으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253"

을 "254"로 하고 "농림직 12"를
"농업직 2"로 하며 그다음에 "임
업직 10"을 추가하고 7급정원 "476"
을 "471"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
직 "333"을 "334"로 하고 "농
림직 4"를 "임업직 4"로 하며 8
급정원 "17"을 "40"으로 하고 정
원내용중 행정직 "12"를 "35"로
하며 9급정원 "111"을 "38"로 하
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0"을 "87"
로 한다.

고용직정원 "374"을 "375"로 하고
정원내용중 타자원 "69"을 "70"으
로 하며 합계정원 "1,681"을 "1,507"
로 한다.

나.수도특별회계 8급정원 "1"을
"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에 "행
정직 2"를 신설하며 9급정원 "17"
을 "15"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
정직 17"을 "15"로 한다.

(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일반회계 5급정원 "316"을 "214"
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40"
을 "238"로 하며 "행정 또는 농
림직 17"을 "행정 또는 임업직
17"로 하고 6급정원 내용중 "행
정 또는 농림직 34"를 "행정 또
는 임업직 34"로 하며 "행정농림
또는 축산직 4"를 행정, 농림 또
는 축산직 4"로 하고 "농림직 1"
을 "임업직 1"로 하며 7급정원
내용중 농림직 34"를 "농업직 4"

로 하고 또 다음에 "임업직" 30"을 추가하여 8급정원 "1,726"을 "2,03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330"을 "1,586"으로 하여 농림직 "45"을 "49"로 하고 보원직 "34"을 "38"로 하며 토목 또는 건축직 "192"을 "236"으로 하고 지적직 "60"을 "63"으로 하며 9급정원 "1,764"을 "1,465"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423"을 "1,177"로 하여 농림직 "18"을 "14"로 하고 보원직 "21"을 "17"로 하며 토목 또는 건축직 "206"을 "162"로 하고 지적직 "67"을 "64"로 하며 고공직정원 "1,933"을 "1,937"로 하여 정원내용중 조질수 "2"을 "0"으로 하며 합계정원 "8,177"을 "8,189"으로 한다.

나. 수도사업특별회계 5급정원 "32"을 "34"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5"을 "17"로 하며 6급정원 "98"을 "102"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47"을 "51"로 하며 7급정원 "153"을 "15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85"을 "89"로 하여 8급정원 "214"을 "282"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34"을 "176"으로 하며 토목 또는 건축직 "52"을 "78"로 하고 9급정원 "416"을 "354"로 하여 정원내용중 행정직 "343"을 "307"로 하고 토목 또는 건축직 "59"을 "33"으로 하며 합계정원

"1,683"을 "1,69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54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8급정원 "111"을 "12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7"을 "27"로 하며 9급정원 "101"을 "9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7"을 "7"로 하며 의료직 정원 "563"을 "580"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원 "377"을 "494"로 하며 합계정원 "1,156"을 "1,18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중사주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155 호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중 8급정원 "2,891"을 "3,305"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883"을 "3,226"으로 하며 농림직 "8"을 "9"로 하고 토목직 "70"을 신설하며 농림직 "9"를 농업직 "9"로 하고 9급정원 "4,404"를 "3,990"으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4,005"를 "3,662"로 하고 농림직 "17"을 "16"으로 하며 토목직 "382"를 "312"로 하고 농림직 "16"을 농업직 "1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대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156 호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내용중 "농림직 1"을 "임업직 1"로 하고 8급정원 "17"을 "18"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12"를 "13"으로 하고 9급정원 "5"를 "4"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157 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자계산소 지방공무원정원표 8급정원 "9"을 "11"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9"을 "11"트 하며 9급정원 "3"을 "1"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3"을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158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 내용중 "농림직 1"을 "임업직 1"로 하고 8급정원내용중 "농림직 2"을 "임업직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159 호

서울특별시합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합운동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중 8급정원 "3"을 "4"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을 "2"로 하며 9급정원 "8"을 "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계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0 호

서울특별시세계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계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계종문화회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8급정원 "4"를 "9"로 하
고 정원내용 행정직 "4"를 "9"
로 하며 9급정원 "8"을 "3"으
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8"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1 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환경연구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8급정원 "3"을 "5"
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3"
을 "5"로 하며 9급정원 "9"
를 "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8"을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2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정원표 8급정원 "30"을 "3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0"을 "23"으로 하며 9급정원 "41"을 "38"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3"을 "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3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지방공무원정원표

나. 부녀복지관 8급정원 "3"을 "4"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3"을 "4"로 하며 9급정원 "2"을 "1"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2"을 "1"로 한다.

다. 근로청소년리간 8급정원 "1"을 "3"으로 하고 정원내용 행정직 "1"을 "3"으로 하며 9급정원 "9"을 "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8"을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4 호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8급정원

"5"를 "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을 "2"로 하며 9급정원 "7"을 "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을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무총리령 승인된 당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구제발전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환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5 호

서울특별시서울지구개발사업소설치
조례를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울지구개발사업소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5급정원
내용중 "농림직 1"을 "임업직 1"
로 하고 6급정원내용중 "농림직
1"을 "임업직 1"로 하여 7급
정원내용중 "농림직 2"을 "임업
직 2"로 하고 8급정원 "8"을
"9"로 하여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8"로 하고 9급정원
"3"을 "2"로 하여 정원내용
정직시 "3"을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광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합천선본부설치조례를 개정조례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환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6 호

서울특별시서울합천선본부설치조례를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서울합천선본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 2항중 "지방농림기정"을
"지방임업기정"으로 한다.

제 10조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별표) 종합건설본부 지방공무원정원표

가. 공사본부정원표 4급정원 내용
중 "농림 또는 건축직 3"을
"임업 또는 건축직 1"로 하고 5
급정원내용중 "농림직 2"를 "임업
직 2"로 하여 6급정원내용중 "농림
직 2"를 "임업직 2"로 하고 7급
정원내용중 "농림직 5"를 "임업직 5"
로 하여 8급정원 "30"을 "25"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0"을 "15"
로, 건축직 "9"을 "10"으로 하여 "농
림직 3"을 "임업직 3"으로 하고 9급정
원 "17"을 "1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9"을 "4"로, 건축직 "3"
을 "2"로 하여 "농림직 1"을 "임
업직 1"로 하고

다. 지원사업소정원표 8급정원 "25"를 "32"로 하고 건설사업소 정원내공공 행정직 "8"을 "12"로, 토목직 "12"를 "15"로 하며 9급정원 "22"를 "15"로 하고 건설사업소 정원내공공 행정직 "6"을 "2"로, 토목직 "13"을 "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7호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제 1항중 "지방농림기정"을
 "지방임업기정"으로 한다.
 제 5조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별표) 녹지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4급 정원내공공 "농
 립직 1"을 "임업직 1"로 하고

5급정원내공공 "농림직 2"를 "임
 업직 2"로 하며 5급정원내공공
 "농림직 4"를 "임업직 4"로 하고
 7급정원내공공 "농림직 3"을 "임
 업직 3"으로하며 8급정원 "6"을
 "8"로 하고 정원내공공 행정직 2
 를 "4"로하며 "농림직 3"을 "임
 업직 3"으로하고 9급정원 "11"을
 "9"로하며 정원내공공 "행정직 2"
 를 삭제하고 "농림직 9"를 "임업
 직 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68 조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 4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제6 조제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5급정원내용중 "행정직 또는 농림직1"을 "행정직 또는 임업직1"로 하고 "농림직1"을 "임업직1"로 하며 6급정원내용중 "농림직2"를 "임업직2"로 하고 7급정원내용중 "농림직3"을 "임업직3"으로 하며 8급정원 "8"을 "11"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을 "6"으로 하며 "농림직2"를 "임업직2"로 하고 9급정원 "11"을 "6"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6"을 "3"으로 하고 "농림직3"을 "임업직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영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 제2169호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 조제2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별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5급정원내용중 "농림직1"을 "임업직1"로 하고 6급정원내용중 "농림직2"를 "임업직2"로 하며 7급정원내용중 "농림직3"을 "임업직3"으로 하고 8급정원 "18"을 "19"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8"을 "9"로 하고 9급정원 "9"를 "8"로 하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6"으로 하고 "농림직2"를 "임업직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영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 제2170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자문차관리사업소지빙공무원
 정원표 3급정원 "42"을 "53"으
 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9"을
 "50"으로하며 9급정원 "38"을
 "27"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6"을 "2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
 예 공포한다.

1987. 4. 26

서울특별시장 임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1 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8급정원
 "3"을 "5"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
 직 "1"을 "3"으로하며 9급정원
 "8"을 "6"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7"을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문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임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2 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 2항 "지방농림기정"을
 "지방임업기정"으로 한다.

(별표) 한강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4급정원내용중 "농림 또는 토
 목직 1"을 "임업 또는 토목직 1"
 로 하고 5급정원내용중 "농림직
 2"를 "임업직 2"로, 하며 6급
 정원내용중 "농림직 2"를 "임업직
 2"로 하고 7급정원내용중 "농림
 직 2"를 "임업직 2"로 하며 9
 급정원 "59"을 "62"으로하고 정원
 내용중 행정직 "14"을 "18"로 하
 며 "농림직 4"를 "임업직 4"로
 하고 9급정원 "41"을 "37"로하
 며 정원내용중 행정직 "9"을 "5"
 로 하고 "농림직 2"를 "임업직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들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3 호

서울특별시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 정
원표 8급정원 "50"을 "58"로 하
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2"를
"17"로, 화공 또는 토목직 "18"을
"21"로 하여 9급정원 "47"을
"39"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6"을 "21"로, 화공 또는 토목
직 "14"를 "1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들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4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소방직
정원내용중 소방교 "467"을 "497"
로하고 소방사 "1,493"을 "1,463"
으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사업에출당해운영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p>◎ 서울특별시규칙 제 2169 호</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인원 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인원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p> <p>○ 별표 1 중 교향악단단을 다음과 같 이 한다.</p>		<p>과. 총 무 1 인 마. 제 1 수석 18 인 바. 제 2 수석 12 인 사. 부 총 무 2 인 아. 관 천 75 인 자. 악보담당 2 인 차. 악기원성 2 인</p>		
<p>1. 교향 악단 (120인)</p> <p>(별표 2)</p>		<p>가. 상임지휘자 1 인 나. 지휘자 1 인 다. 악장 2 인</p> <p>금 악 첼 의</p>	<p>○ 별표 2, 별표 6, 별표 7 은 별지와 같 이 한다.</p> <p>부 칙 이 공치는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단위: 원)				
호	교향악단	오케라달	소년소녀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정	741,000	741,000	-	-
1	691,000	648,000	648,000	431,000
2	683,000	416,000	416,000	416,000
3	670,000	397,000	397,000	397,000
4	660,000	378,900	378,000	378,000
5	648,000	360,000	360,000	360,000
6	638,000	342,000	342,000	342,000
7	628,000	330,000	330,000	330,000
8	617,000	323,000	322,000	322,000
9	608,000	314,000	314,000	314,000
10	597,000	297,000	297,000	297,000

호 봉	교 함 약 단	오 께 라 단	소년소녀교함약단	가 락 세 출 단 지
11	585,000	286,000	286,000	286,000
12	573,000	278,000	278,000	278,000
13	561,000	267,000	267,000	267,000
14	546,000	254,000	254,000	254,000
15	531,000	246,000	246,000	246,000
16	518,000	238,000	238,000	238,000
17	506,000	228,000	228,000	228,000
18	491,000	216,000	216,000	216,000
19	474,000	207,000	207,000	207,000
20	459,000	200,000	200,000	200,000
21	445,000	187,000	187,000	187,000
22	437,000	170,000	170,000	170,000
23	421,000	149,000	149,000	149,000
24	405,000			
25	396,000			
26	374,000			
27	352,000			
28	320,000			
29	294,000			
30	259,000			
31	229,000			
32	213,000			
33	191,000			
34	169,000			

(별표 6) 리 책 수 당 (단위: 원)

구	분	인원	월 책 수 당	비 고
로 향 약 단	상 임 지 위 자	1	159,000	
	지 위 자	1	139,000	
	약 장	2	125,000	
	총 무	1	118,000	
	제 1 수 석	18	102,000	
	제 2 수 석	12	87,000	
	부 총 무	2	58,000	
	약 보	2	43,000	
오 제 라 단	단 장	1	159,000	
	기 회 담 당	1	118,000	
	총 무	1	74,000	
소년소녀교향악단	지 위 자	1	139,000	
	총 무	1	74,000	
극악합원악단	지 위 자	1	238,000	
	약 장	2	146,000	
	총 무	1	102,000	
	수 석	6	87,000	
	부 수 석	6	58,000	
기타예술단체	지위자, 단장	4	238,000	
	가무단체도원	4	58,000	
	수 석	10	23,000	
	부 수 석	10	20,000	
	총 무	3	74,000	

(별표 7)

예능연구보조비일액

(단위: 원)

호	교 학 약 단			호	오케라단		소년소녀 포함악단		가타예술단체
	보	인원	월 액		비 고	보	월 액	월 액	
1	1	440,000	산림지휘자	정	440,000	-	-	-	
2	1	424,000	지휘자	1	308,000	308,000	218,000	218,000	
3	2	410,000	악장	2	256,000	256,000	210,000	210,000	
4	18	366,000	제 1 수석	3	244,000	244,000	201,000	201,000	
5	12	308,000	제 2 수석	4	233,000	233,000	194,000	194,000	
6	11	250,000	단원	5	223,000	223,000	183,000	183,000	
7	10	204,000	"	6	218,000	218,000	171,000	171,000	
8	13	160,000	"	7	210,000	210,000	166,000	166,000	
9	12	131,000	"	8	201,000	201,000	160,000	160,000	
10	12	118,000	"	9	194,000	194,000	156,000	156,000	
11	14	102,000	"	10	183,000	183,000	152,000	152,000	
12	14	88,000	"	11	171,000	171,000	146,000	146,000	
				12	166,000	166,000	139,000	139,000	
				13	160,000	160,000	134,000	134,000	
				14	156,000	156,000	130,000	130,000	
				15	152,000	152,000	124,000	124,000	
				16	145,000	145,000	121,000	121,000	
				17	139,000	139,000	113,000	113,000	
				18	132,000	132,000	108,000	108,000	
				19	126,000	126,000	103,000	103,000	
				20	119,000	119,000	101,000	101,000	
				21	113,000	113,000	90,000	90,000	
				22	105,000	105,000	76,000	76,000	
				23	90,000	90,000	65,000	65,000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4.28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㉔

◎ 서울특별시규칙제 2170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고 제1
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관을 보좌하게 하기위하여
홍보계획담당관, 홍보계 및 보도계
를 두고 공보계장과 보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홍보계획담당관은 시장홍보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각종 홍보자료 제
작을 통제한다.

제9조의2 제1항중 "지방농림기과"
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제31조(연료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연료과) (1) 연료과에 석탄계,
석유계 및 열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연료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과호와 같다.

- 1. 석탄계
- 가. 석탄수급조절 종합계획수립

- 및 조정
- 나. 연탄공장 지도감독
- 다. 연탄판매업소 및 유통기구 지
도 감독
- 라. 연탄가스위해방지 및 연탄중
질관리
- 마. 산업동원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바. 국내 다른지의 주본계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 2. 석유계
- 가. 석유류 수급조절, 종합계획수
립 및 조정
- 나. 석유대리점 및 판매업소 지
도감독
- 다. 석유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 라. 저유시설 관리지도
- 마. 비상시 석유수급대책에 관한
사항
- 3. 열관리계
- 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
- 나.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지
정 및 지도감독
- 다.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 라. 자가용 전기용작을 인가
- 마.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및
지도감독
- 바. 전기공사업 면허 및 지도
감독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 아. 현대 자원에너지 개발 및 연구

제 31 조의 2 (가스과)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1 조의 2 (가스과) (1) 가스과에 안전관리제, 도시가스제 및 고압가스제를 두고 안전관리제장과 고압가스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가스제장은 지방화공기관으로 보한다.

(2) 가스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제

가. 가스안전관리업무의 종합계획 및 총괄조정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업무 집행라.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마. 고압가스 점 단공급사업허가 및 적도감독

바. 파내 타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가스제

가. 도시가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나. 도시가스 사업 허가 및 공사 제척 승인

다. 도시가스 사업체 지도감독라. 액화천연가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마.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집행

3. 고압가스제

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수급조절 종합계획 수립

나. 고압가스 제조, 충전, 저장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다.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별관리 제조허가 및 지도감독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집행다. 공업계획 대체추진

바.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지도감독

사. 가스용품 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제 35 조 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제 46 조 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제 46 조의 2 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제 87 조 제 1항중 "지방농림기과"를 "지방임업기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4. 28

서울특별시감 염 보 인

◎서울특별시규칙 제 2171 호

서울특별시외국사무부부장규칙 제 2171 호

서울특별시외국사무부부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재무과) ①재무과에 관제제, 계약제, 지출제와 공과금제(용산, 은평, 마포, 동작, 관악, 강남구에 한한다)를 두고 재정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재무과의 제철분장사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제제

가. 국·공유 보물재산의 관리 및 처분
나. 재산수입의 수납

다. 행정재산의 출발

라. 국내 다른 과 및 외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계약제

가. 공사도급, 물품구매계약 등

나. 주달물품구매 및 출입업자 등등

다. 기출원인행위부 정리

라. 발품관리 및 공사물품입회

3. 지출제

가. 지출 및 세입세출 총합 및 결산

나.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원리

다. 원천징수 불입

라. 직할지출에 관한 사항 및 국제소화

마.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4. 공과금제

가. 상하수도사용료, 오물수거수수료,

불기사용료, TV시청료, 도시가스사

용료 및 방범비의 부과징수 조정

나. 소관 체납공과금액 대한 미수관리 (납기후 2개월간)

다. 소관 공과금이 대한 권원처리
라. 소관 공과금에 대한 자료관리
마.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 8 조 (사무1과) 제 2 항제 1 호중

"가"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 세입출발 및 결제,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 감독 등 세외수입총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9 조의 2 (공과금과) 삭제

제 12 조제 1 항중 "지방농림기사" 를 "지방농업기사" 로 한다.

제 14 조 (청소과) 제 2 항제 1 호중 "나"

목 내지 "자" 목을 "다" 목 내지 "차" 목으로 하고 "가" 목 및 "나"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오물수거수수료 조정 및 징수 (용산, 은평, 마포, 동작, 관악, 강남구는 제외한다)

나. 오물수거수수료 체납관리 (난 용산, 은평, 마포, 동작, 관악, 강남구는 납기경과 2개월후)

제 18 조제 1 항중 "지방농림기사" 를 "지방농업기사" 로 한다.

제 19 조 (건설관리과) 제 2 항제 1 호중 "라" 목을 "마" 목으로 하고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로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수도관리과) 제 1 항과 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단, 용산, 은평, 마포, 동작, 관악, 강남구는 별도로 규정한다"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도관리과 (용산, 은평, 마포, 동작, 관악, 강남구에 한한다)에 관리계, 지도계 및 정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가. 구수도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차관관리

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 수납관리 및 조정총괄

라. 하수도사업비 세입금 수납관리 조정총괄

카. 수도사업특별회계 소속공무원의 급여후생 및 고용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도계

가. 동공과금 (상·하수도사용료) 조정사항 실시 및 지도관리

나. 다량급수처 및 영업용 수전 급수사용량 확인점검 및 분석

다. 급수조례위반자 단속 및 처분

라. 상·하수도관련 과태료 부과 정수

마. 수도관리과 (상수기신설 및 변경 사항)

3. 정리계

가. 상·하수도사용료 채납정리 (납기정리 2개월후)

나. 지하수사용량 점검 및 실시

다. 지하수사용료 조정 및 징수 관리

라. 상·하수도사업비 과오납금 총당 및 환급처리

제 22 조 (수도공사업과)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수도공사업과 공무 1 계, 공무 2 계 및 기전계를 두고 공무 1 계장과 공무 2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기전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 기사로 보한다

동조 제 2 항중 "제 1 호"를 삭제하고 "제 2 호" 및 "제 3 호"를 "제 1 호" 및 "제 2 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엄보현 ⑩

◎서울특별시규칙제 2172호

서울특별시특종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특종지구개발사업소 사
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지방농림기자"를 "지
방잡업기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73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농림기자"를
"지방잡업기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농림기자"를
"지방잡업기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74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사무분장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농림기자"를
"지방잡업기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농림기자"를
"지방잡업기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사
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75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사무
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사무
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지방농림기사”를
“지방임업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2176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지방농림기사”를
“지방임업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7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25 호(87.4.1)
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된 서대문구 홍은동 356-9 일대에
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
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학교(명지중·고교)	서대문구홍은동356-9 일대	40,180	
변 경	학교(명지중·고교)	서대문구홍은동356-9 일대	42,853	중)1,673㎡
나. 지적승인 도면: 별첨				

<p>◎서울특별시고시제 286 호</p> <p>공원임장포함 징수할 수 있는 공원지정</p> <p>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공원을 공원임장포함 징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 고시한다.</p> <p>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인)</p> <p>1. 공원명칭 : 월곡 제 1 근린공원 2. 공원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면동 28-3 번지 일원 347,917㎡</p>	<p>3. 설치관리자의 명칭 : 일우공업주식회사 및 대포자 정명 대표이사 조 용 하</p> <p>◎서울특별시고시제 285 호</p> <p>도시공원시설사용료승인</p> <p>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 6 조 별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한다.</p> <p>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인)</p>
--	--

구 분	시 설 명	사용구분	금 액	비 고
월곡 제 1 근린공원에 유역(배리고라운드)의 시설	회전목마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300	
	하반기전거 (사이클모노레일)	어 른 1 회	500	
		청소년 1 회	400	
		어린이 1 회	300	
	근물놀이차 (슈머스윙)	어 른 1 회	700	
		청소년 1 회	600	
		어린이 1 회	400	
	우주항복선 (아프미코스타)	어 른 1 회	1,200	
		청소년 1 회	1,000	
		어린이 1 회	700	

구 분	시 설 명	사 용 구 분	금 액	비 고
	회전열차 (엘터프라이즈)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900 700 500	
	온라열차 (젯트코스타)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1,200 1,000 700	
	전자전투기 (선더버드)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500 350 200	
	아 기 차 (밧레리카)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500 400 300	
	포우땅놀이 (패드마우스)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900 700 500	
	코 마버스 (디너라이드)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600 500 400	
	다람쥐동 (목큰볼)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400 300 200	
	동물타기 (사과리페트)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500 400 300	
	스포츠키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700 500 400	
	하늘택시 (스카이라이어)	어 른 1 회 청 소 년 1 회 어 림 이 1 회	400 300 200	

구 분	시 설 명	사 용 구 분	금 액	비 고
원곡 제 1 군 민공월내 운 동시설	실의수명장	어 른 1 회	1,960	
		청 소 년 1 회	1,700	
		어 린 이 1 회	1,100	
		청 소 년 모험놀이	어 른 1 회	200
		청 소 년 1 회	150	
		어 린 디 1 회	100	
원곡 제 1 군 민공월내 기 타시설	주 차 장	1 구 회 당 30 분 마다	200	

사 업 소 고 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 호

선박운항허가

한강구역내 수상장비 이동을 위한

선박운항 허가내역

가계방토석운반에 의하여 하천법 제 25 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동법 제 25 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1987년 4월 28일
한강관리사업소장

검용수허가자	검 용 위 치	검 용 목 적	검 용 내 역
원전검리대리 김 영 준	성동구기양동 364 번지앞 하천	수상장비 이동을 위한 가 계방토석 운반	토운선 12척 제인선 10척

○ 허가기간: '87. 4. 25~5. 24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70 호

제 2 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전기공사법 제 31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다 — 읍 —

면허번호	상 호	소 계 지	대표자	취소일자	비 고
850	진 우 전 기	중구수표동 56-14	김재상	'87. 4	전기공사업행
287	동신전업사	중구율지도3가302-2	김철호	"	제7조(면허기
248	성동전기공사	중구용인동 99	김용래	"	준미달) 위반
297	명 일 건 설	중구주교동 327	김영희	"	

끝.

◎서울특별시시공고제 2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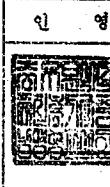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권의
직인신조등록

보건사회부소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
금출납명령권의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
적인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등
록하고 등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영보연

직인등록조서

회 계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청소) : 중 구 청
직 명 : 중구본인식품기
금출납명령권
사용개시일 : '8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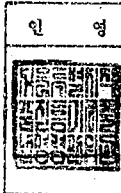
직인등록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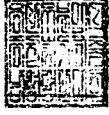




회 계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청소) : 종로구청
직 명 : 종로구본인식품
기금출납명령권
사용개시일 : '87. 4









직인등록조서

회 계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청소) : 서울특별시
직 명 : 서울특별시식품
기금출납명령권
사용개시일 : '87. 4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용산구청</p> <p>직명 : 용산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판</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성북구청</p> <p>직명 : 성북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판</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성동구청</p> <p>직명 : 성동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판</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도봉구청</p> <p>직명 : 도봉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판</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동대문구청</p> <p>직명 : 동대문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판</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은평구청</p> <p>직명 : 은평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판</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서대문구청</p> <p>직명 : 서대문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관</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구로구청</p> <p>직명 : 구로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관</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마포구청</p> <p>직명 : 마포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관</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영등포구청</p> <p>직명 : 영등포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관</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강서구청</p> <p>직명 : 강서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관</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u>직인등록조서</u></p> <p>회계명 : 식품진흥기금</p> <p>관서명 (청소) : 동작구청</p> <p>직명 : 동작구 분입식품 기금 출납명령관</p> <p>사용개시일 : '87. 4</p>	<p>인 영</p> 

<p>직인등록조서 회 제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청소) : 관악구청 직 명 : 관악구 본인식품 출납명령판 사용개시일 : '87.4</p>	<p>한강관리사업소 지방건축기사보 최 선 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86.11.14 자 정 직 1월치분을 동일자로 감봉 3월로 변경함</p>
<p>직인등록조서 회 제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청소) : 강남구청 직 명 : 강남구 본인식품기금 출납명령판 사용개시일 : '87.4</p>	<p>◎ 1987년 4월 27일자 형제 123호 전남우안군 지방행정서기 임 석 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은경구 근무를 명함</p> <p>◎ 1987년 4월 25일자 형제 124호 대전시 유성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최 회 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직인등록조서 회 제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청소) : 강동구청 직 명 : 강동구 본인식품기금 출납명령판 사용개시일 : '87.4</p>	<p>강서구 방화2동 지방행정서기 김 성 태 충청남도 대전시 진출을 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령</p> <p>◎ 1987년 4월 25일자 형제 122호 한강관리사업소 지방건축기원 임 문 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86.10.11 자 전 책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p>	<p>◎ 1987년 4월 27일자 형제 125호 강남구 지방행정서기 정 영 복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형제 126호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 성 태 정부합동민원실 파견(연상) ('87.5.17~'87.11.16)</p>

① 1987년 4월 30일자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 3 제 1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행정문구 지방행정서기 이 성 섭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 3 제 1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로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행정문구 지방행정서기 변 훈 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국비장기해외훈련생 파견기간 연장명령 가. 변경명령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국(훈련기간)	훈련분야	당초파견기간	비 고
윤일택	지방행정 기획담당관 사무관	박명현	미국 (미국간주법제)	시민생활 환경개선 대책	'85.9.9- '87.6.23	
나. 연장기간: '87.6.23~6.28 다. 연장사유: 출산인자 변경 비임여권 국비장기해외훈련생 파견기간 연장명령 가. 임명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국(훈련기간)	훈련분야	당초파견기간	비 고
내 부 구	보육기장 공무원	홍준민	프랑스 (유럽보육제)	도시계획	'86.5.30- '87.5.29	
나. 연장기간: '87.5.30~'87.11.29 (6개월) 다. 연장사유: 훈련기관 변경(취학 8개월의외 국립보육제)						
서울구본시청						